



금융감독원

수신 (주)오마이갯대부

(경유)

사본수신 저축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

제목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(고지) 공시송달

1. 2020.10.19.~2020.12.04., 2020.12.07. 및 2020.12.15. 기간 중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 등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(고지)합니다.

2. 다만,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발송한 우편물이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3. 아울러 위의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 (불임2)의 의견진술서를 2021.06.14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불임 1.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(고지)서 1부.
- 2. 의견진술서(서식) 1부.
- 3.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권익보호 신청안내 1부.
- 4. 제재심의위원회 진술방법 및 유의사항 1부. 끝.

금융감독원장



담당부서	저축은행검사국 P2P검사팀				
검사역	05/21 최영식	팀장(J)	05/21 조영범	국장	전결 05/21 이희준

합의자

일상감사

시행 P2P검사팀-441 (2021.05.21.) 접수 ()

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/ <http://www.fss.or.kr>
 전화번호 02-3145-7409 팩스번호 02-3145-7396 / ysik@fss.or.kr / 비공개(5)